

입 법 정 보

- ◆ 법률 제정·개정 주요사항 및 타 시·도 조례 입법동향,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 등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 법령 입법예고 사항은 [법제처\(입법예고\)](#),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법제처(입법예고) :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List.mo?mid=a10104010000>
 - 국민참여입법센터 : <http://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isOgYn=Y>



목 차



I. 법령 제정·개정 동향	1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2
2. 아동복지법 (개정).....	6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	9
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	10
5. 비료관리법 (개정).....	11
6.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13
7.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3
8.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	14
II. 다른 시·도 조례 입법동향	16
1.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17
2. 부산광역시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	17
3. 대구광역시 자가통신망 설치 및 운영 조례.....	18
III.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법제처)	20

I

법령 제정 · 개정 동향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1 [제정 `21. 9. 24. 시행 `22. 7. 1.]

소관부서 : 환경부(기후전략과), 044-201-6978

■ 제정이유

- 최근의 급격한 기후변화는 홍수, 가뭄, 한파, 산불 등의 자연재난과 화재, 감염병 등 사회재난, 일자리 감소 등 경제침체를 비롯한 전방위적인 기후위기로 표출되면서 그 강도와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 파리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 모두는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지님. EU,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을 앞다투어 선언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체제 구축 등을 적극 모색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2020년 7월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같은 해 10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였음.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현행 법·제도상 기후위기 대응 체계는 최초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퍼센트를 포괄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출범의 기반을 다지는 등 그간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이끌어 왔으며 지난 2019년 우리나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초로 감소세로 돌아서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 이행과정에서의 일자리 감소나 지역

경제·취약계층 피해 최소화와 함께,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 성장 추진까지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고려가 불충분하고 법률적 기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법 제정을 통하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이행현황의 점검 등을 포함하는 기후 위기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탄소흡수원의 확충 등 온실가스 감축시책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등 정의로운 전환시책,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지원 등 녹색성장 시책을 포괄하는 정책수단과 이를 뒷받침할 기후대응기금 신설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촉진·활성화를 통해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 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국가비전으로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하여야 함(제7조).

다. 정부는 국가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이행

현황을 매년 점검하며,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은 부진 · 개선사항을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제8조 및 제9조).

라. 정부는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 시행하도록 하고, 시 · 도지사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국가기본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 · 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시 · 군 · 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 시행하도록 함(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마.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는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제15조 및 제22조).

바. 정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도시, 지역 에너지 전환 지원, 녹색건축물, 녹색교통, 탄소흡수원 확충, 탄소포집 · 이용 · 저장기술, 국제 감축사업,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 · 시책을 시행하도록 함(제23조부터 제36조까지).

사. 정부 · 지방자치단체 및 기후위기 영향에 취약한 시설을 보유 · 관리하는 공공기관은 기후위기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 · 시행하도록 하고, 이외에도 기후위기 감시 · 예측,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녹색국토의 관리, 농림수산 전환 촉진,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등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제도 · 시책을 시행하도록 함(제37조부터

제46조까지).

아. 정부는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고,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를 지정하며, 사업전환 지원, 자산손실 위험 최소화, 국민 참여 보장, 협동조합 활성화,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설립 등 정의로운전환을 위한 제도·시책을 시행하도록 함(제47조부터 제53조까지).

자. 정부는 녹색경제·녹색산업을 육성·지원하고, 녹색경영, 녹색기술 연구개발·사업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세·금융,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표준화·인증, 집적지·단지조성, 일자리창출, 정보통신 기술·서비스 시책, 순환경제 활성화 등 녹색성장을 위한 제도·시책을 시행하도록 함(제54조부터 제64조까지).

차.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구성·운영, 녹색제품 등 생산·소비 문화의 확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등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시책을 시행하도록 함(제65조부터 제68조까지).

카.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운용·관리하도록 함(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아동복지법

2 [일부개정 `20. 12. 29. 시행 `22. 7. 1.]

소관부서 :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 044-202-3415

■ 개정이유

-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망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그간 아동학대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체 아동학대사건 발생건수는 2015년부터 2019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여전히 아동학대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학대 고위험군 아동을 예측하는 시스템인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학대 고위험군 아동 정보를 토대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양육환경 조사, 복지서비스 제공, 수사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연계 등의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교육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부처 간 학대 고위험군 아동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하도록 함.
- 또한, 원가정 보호원칙을 개선하기 위해 아동학대가 강하게 의심되고,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자로부터 피해아동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여부를 결정할 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아동을 상담·치료한 의사 등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며,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원가정 복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사후 관리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하는 사람에게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함(제12조제1항 후단 신설).
- 나.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아동보호업무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 다. 가정 내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할 수 있는 사람을 친족으로 명확히 함(제15조제1항).
- 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이외의 자가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하도록 규정함(제15조제2항 신설).
- 마.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조치하는 경우 학대피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아동을 즉시 분리하여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 일시 보호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제6항).
-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제15조의2 신설).
- 사.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실시 기록이 없거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아동 정보 등을 토대로 학대 고위험군 아동을 발굴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한 후 복지 서비스의 제공, 보호조치, 수사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연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15조의4 신설).

아. 보호조치 중인 아동과 가족 간의 면접교섭에 대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15조의5 신설).

자.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정보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과 공유하도록 정보 공유 규정을 신설함(제22조의2제3항 신설).

차. 입양기관의 장도 아동통합정보시스템상 학대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제한명령 대상이 되는 아동관련기관에 지방자치단체(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한정)와 입양기관을 추가함(제28조의2 및 제29조의3).

카. 정신질환이 있거나 마약류에 중독된 자 등은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로 취업을 제한하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함(제54조의2 신설).

타.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65조 및 제71조).

파.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 시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가족이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지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각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75조).

■ 개정이유

- 코로나19 이후 세계 각국이 식량수출 제한조치를 취하는 등 식량안보 위협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확대하고, 자급목표를 자급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하며,
- 먹거리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경제를 확산시키고 먹거리 보장 및 지속 가능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및 이에 대한 국가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존 추진계획의 평가·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자급목표는 자급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정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함(제14조제2항).
- 나.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세울 때, 전체 식량(식용 곡물에 한정함)자급률 및 주요 곡물의 식량자급률, 전체 곡물자급률 및 주요 곡물의 곡물자급률을 포함하도록 함(제14조제3항).
-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등에게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식품 지원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제23조의2 신설).
-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먹거리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3조의3 신설).

마. 정부가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내외 정보통신기술 표준·융복합의 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36조의2).

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 `22. 1. 4. 시행 `22. 7. 5.]

소관부서 : 중소벤처기업부(지역특구과), 044-204-759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선택적인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지역의 자립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2004년에 도입되었으며, 현행법에 의거하여 총 194개의 지역특화발전특구가 58개의 개별 법률에서 정한 128개 규제특례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운영하며 지역별 특화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의 지역경제 어려움 극복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필요한 규제 특례의 보강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운영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양적으로 팽창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해제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실상 운영이 종료된 곳은 원활히 퇴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지역특화산업과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재도약하고 지역경제 발전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비료관리법

5 [일부개정 `22. 1. 4. 및 시행 `22. 7. 5.]

소관부서 : 농림축산식품부(농기자재정책팀), 044-201-1892

■ 개정이유

- 폐기물 처리를 목적으로 비포장 비료를 대량으로 매립·살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포장 비료가 실제 공급·사용되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7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하면서 신고수리제를 도입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등록취소나 영업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며, 비포장 비료를 공급·사용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사용량’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비포장 비료의 공급 및 사용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 또한, 비료의 사용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시·도지사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비료의 공급 주체인 시·도지사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제7조제1항).
-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비료의 보증 표시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제4항 신설).
- 다. 비료생산업자등이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한 비료등을 판매·유통·공급 또는 자신이 사용하려는 경우 공급 또는 사용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비료사용자가 해당 비료를 공급·사용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사용량’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비료의 사용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제19조의2).
- 라. 비료생산업자등이 안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판매·유통·공급 또는 사용 전 신고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도록 함(제20조).
- 마.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사용량을 초과하여 비료를 공급·사용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30조).

6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2. 7. 5. 시행 `22. 7. 5.]

소관부서 : 교육부(교육기획보장과), 044-203-6520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던 초·중등학교 교직원의 구체적인 배치기준을 각급 학교의 관할청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된 취지에 맞추어 이 영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안학교의 교직원 배치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7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2. 7. 11. 시행 `22. 7. 12.]

소관부서 :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 044-200-5517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어구(漁具)를 감척(減隻)하는 등의 어업구조개선*사업의 범주에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을 포함시켜 정치망어업자에 대해서도 어업구조개선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근해어업의 범위에 정치망어업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756호, 2022. 1. 11. 공포, 7. 12. 시행)됨에 따라,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된 정치망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자가 ‘어선·어구 감척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그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절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어업구조개선: 수산자원의 조성·보호, 연근해어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어선·어구의 감척을 추진하고, 어구의 사용량 등을 조정하는 등 어업선진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정치망어업: 면허어업으로서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1호)

8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22. 1. 18. 시행 `22. 7. 19.]

소관부서 : 문화체육관광부(스포츠산업과), 044-203-3153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2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수익을 허가하거나 관리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체육시설을 프로스포츠 구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었지만 지난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관중 축소 및 무관중 경기와 리그 조기 종료 등으로 프로스포츠의 피해가 극심해지고 프로스포츠 구단의 수익 사업에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 뿐만 아니라 일반재산의 대부를 통한 수익사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대부를 가능하게 하고, 사용료 또는 납부 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일반재산을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침체된 프로스포츠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Ⅱ

다른 시·도 조례 입법동향

1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의결일 `22. 6. 21.]

■ 개정이유

- 상위법인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2021. 4. 20. 개정, 2022. 4. 21. 시행)으로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는 ‘보건위생물품’ 용어가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생리용품’으로 변경됨.
- 이에 따라 이 조례상의 ‘위생용품’ 용어를 ‘생리용품’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위생용품’ 용어를 ‘생리용품’으로 개정함 (안 제19조제7항)

2

부산광역시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

[의결일 `22. 6. 21.]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의 중고령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보호와 삶의 질 확보,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함 (안 제1조~제2조)
- 나. 중고령 중증장애인에 대한 시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함 (안 제3조~제4조)
- 다.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라.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사업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제7조)
- 마. 중복지원금지를 규정함 (안 제8조)
- 바.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사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 (안 제9조)

3

대구광역시 자가통신망 설치 및 운영 조례

[의결일 `22. 7. 22.]

☐ 개정이유

대구광역시 행정통신망을 시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게 됨에 따라 관련 시설 및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스마트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제정 목적, 용어, 명칭, 기능 등 정의함 (안 제1조~4조)
- 나. 자가통신망의 이용계획 수립을 규정함 (안 제5조)
- 다. 자가통신망 관련 중복투자 방지와 경비부담 및 관련 재산의 소유를

명시함 (안 제7조~제10조)

라. 자가통신망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자가통신망의 주요운영 안전을 심의를 하도록 함 (안 제13조~제16조)

마. 자가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스마트광통신센터를 두도록 함 (안 제17조~제21조)

바. 정보보호와 및 비상사태시의 대응책 마련을 규정함 (안 제21조~제23조)



자치법규 입법의견 해석례 (법제처)

1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의회사무기구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둔다”고 규정한 조례 규정이 같은 항에 위반되는지(「진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5조제1항 관련)

[의견22-0194] 충청북도 진천군

■ 질의요지 및 의견

○ 질의요지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의회사무기구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둔다”고 규정한 조례 규정이 같은 항에 위반되는지?

○ 의견

질의요지와 같은 규정을 두더라도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는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

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진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이하 “진천군 조례” 이라 함) 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진천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진천군의회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귀 기관에서는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과 다르게 진천군조례 제5조제1항에서 정책지원관을 “둔다”고 규정한 것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것인지에 관한 입법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필요성,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것인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고, 진천군이 진천군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진천군조례 제5조제1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고 규정하였다면 입법재량의 범위에서 조례제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진천군조례 제5조제1항이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오히려 조례에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게 되면 정책지원관을 두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상위 법령을 단순히 반복·재기재하는 것에 불과하게 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형식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2

안동시장은 공설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 (「안동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관련)

[의견22-0188] 경상북도 안동시

■ 질의요지 및 의견

○ 질의요지

안동시장은 「안동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에 따라 공설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법인이 아닌 자연인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아닌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하므로 조례를 해석할 때에도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안동시장이 공설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는, 행정재산의 사용료 부과 및 면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등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공유재산법 제2조의2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법률에 공설시장 사용료의 면제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유재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재산 사용료의 면제 기준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유재산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고(제22조제1항 본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제24조제1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원칙적으로는 사용료를 징수하되,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로 열거한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과 관련하여 공유재산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는 행정재산 사용료의 면제사유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서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제1호)와 “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제4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1호와 관련하여 「안동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에서는 안동시장은 천재·지변 그 밖에 재해로 인하여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복구완료 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4호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제3항에서는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은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특산품으로 지정된 품목 또는 특산품 지정상표로 등록된 제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동시장이 공설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면제하려면, 그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 해당하거나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특산품으로 지정된 품목 또는 특산품 지정상표로 등록된 제품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 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3. 청사(廳舍)의 구내재산을 공무원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4.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의 무상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유상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5. 법 제24조제1항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6. 사용허가의 신청 당시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행정재산 중 일부에 대해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 전체의 가격을 말한다)이 1천만원(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7.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8.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9.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10.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1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임시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2.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하여 임시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3.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라 한다)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 면제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年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식재산(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의 사용료 면제기간은 20년으로 한다.

③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인 그 부지의 사용료를 제1항의 연간 사용료에 합산한다. 다만, 부지 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과 제3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 사용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최초의 사용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사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한 경우

2. 제13조제3항제21호·제22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한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한 경우

「안동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가 개설한 공설시장 및 임시시장 운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장”이라 함은 공설시장을 말하며, 공설시장은 상설시장·정기시장·임시시장으로 구분한다.
2. “상설시장”이라 함은 매일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
3. “정기시장”이라 함은 정기적으로 개시되는 시장을 말한다.
4. “임시시장”이라 함은 임시적으로 개시되는 시장을 말한다.
5. “점포”라 함은 상품을 진열, 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 및 벽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장옥”이라 함은 상품을 진열, 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만으로 형성된 건축물을 말한다.
7. “노점”이라 함은 점포 및 장옥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시장부지 및 시장부지 인접 도로변에서 일시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소규모의 이동 좌판을 말한다.
8. “사용자”라 함은 시장 내 점포·장옥·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자를 말한다.
9. “수탁자”라 함은 시장의 운영 및 관리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5조(개설 및 사용허가) ①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장 사용허가신청서를 안동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 및 일시 사용에 관하여는 구두신고로서 사용허가에 갈음하되 안동시장이 그 위치를 지정 할 수 있다.

②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임시시장 개설허가 신청서를 안동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안동시장은 임시시장 개설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임시시장개설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안동시장은 시장 사용을 허가 하거나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를 할 경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보증금 납부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장사용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사용허가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를 할 경우 그 사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안동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장 허가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일 1개월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연장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① 시장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 라 한다)는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의 점포·장옥·노점을 계속 사용하는 자는 별표 2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허가면적(이하 “사용면적” 이라 한다)에 따라 월별로 계산하여 다음달 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산정·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월 사용일수가 1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징수한다.

2. 사용자가 사용기간 내에 휴업한 경우에도 사용료를 징수하며, 사용기간 내에 사용허가 취소또는 폐업하였을 때의 당월 분 사용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3. 점포·장옥·노점이 둘이상의 공시지가 및 과세시가표준액에 해당될 경우에는 높은 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4. 하나의 필지 내에 2 이상의 점포가 있을 때의 사용료 산출은 총액 범위 내에서 점포의 위치에 따라 안동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거 차등 적용 할 수 있다.

④ 상설 및 정기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 사용(정기시장의 경우 시장 개장일에만

사용할 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매일 또는 매회 당 징수한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 ① 안동시장은 천재·지변 그밖에 재해로 인하여 일정 기간동안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복구완료 기간동안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감면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시장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안동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른 국제기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 및 전문기구, 정부간 기구, 준정부간 기구)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

③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은 「안동시 특산품지정 및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특산품으로 지정된 품목 또는 특산품 지정상표로 등록된 제품으로 한다.

3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중 공개 추첨을 거치지 않고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2년 단임으로 한정하도록 규정한 부칙을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이미 이러한 절차로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등 관련)

[의견22-018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질의요지 및 의견

○ 질의요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중 공개 추첨을 거치지 않고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2년 단임으로 한정하도록 규정한 부칙을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이미 이러한 절차로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미추홀구조례”라 함) 제8조제1항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 추첨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9조제1항에서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 후 임기종료 3개월 이후에는 제8조의 선정 방법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추홀구조례(2020년 11월 16일 인천광역시미추홀구조례 제1613호로 일부개정된 조례를 말하며 이하 같음) 부칙 제2조에서는 “개정된 본 조례에 따라 최초로 구성된 주민자치회는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민자치 위원회의 위원 중 주민자치교육 6시간을 이수하고 위촉을 희망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신규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와 달리 2년 단임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을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이미 이러한 절차로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적용하는 것이 소급입법으로서 불가능한 것인지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조례는 시행일 이후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조례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의 사안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새로운 법령이 그 적용을 받는 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시혜적인 소급입법은 허용되고, 개정 조례 시행 당시 종결되지 않고 진행 중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소위 부진정소급입법으로서 개정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는 법리가 판례 등에서 확립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미추홀구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중 최초로 구성된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가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인바 현재 임기가 진행 중이므로 질의요지와 같이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적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조례 개정은 특정 소수인을 위해 자치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형평성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고,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도 소급입법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안과 같은 조례 개정은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